

인천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2나533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2나5339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19가단27610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한별

담당변호사 임호현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학진

변론 종결2024. 3. 19.

판결 선고2024. 4. 16.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19가단27610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C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동산 인도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동산 인도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0행부터 제3쪽 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3쪽 8행부터 제7쪽 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22행부터 제4쪽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C이 채무초과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8. 26.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C의 적극재산은 총 2,218,767,6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총 2,453,163,425원이어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적극재산: 합계 2,218,767,600원

갑 제2, 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 제4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감정인 R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 5대, 별지2 목록 기재 기계 3대의 감정평가 가액 합계 2,042,767,600원, ②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J]호에 관한 2019. 8. 16.자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채권 115,000,000원(= 계약금 75,000,000원 + 잔금 40,000,000원), ③ 주식회사 F(대표 S)에 대한 대여금 채권 20,000,000원, ④ 자동차 3대 가액 합계 41,000,000원(=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25,000,000원 +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II 화물차 2,000,000원 +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II 화물차 14,000,000원, 평균 중고차량 시세 기준)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당시 주식회사 K에 대한 69,518,904원, 주식회사 L에 대한 5,279,809원, 주식회사 M에 대한 10,424,999원의 각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채권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극재산: 합계 2,453,163,425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원고	70,000,000	갑 제1호증
2	T 주식회사	8,007,200	이 법원의 T 주식회사에 대한 2023. 10. 16.자 사실조회 결과
3	IBK기업은행	30,000,000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2023. 11. 20.자 사실조회 결과
4	주식회사 U	583,651,190	이 법원의 주식회사 U에 대한 2023. 10. 18.자 사실조회 결과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0,000,000	이 법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2023. 10. 24.자 사실조회 결과
6	대한민국	114,743,960	이 법원의 고양세무서(파주세무서)에 대한 2023. 11. 13.자 문서제출명령 결과
7	고양시 일산동구청	4,230,440	이 법원의 일산동구청에 대한 2023. 11. 10.자 문서제출명령 결과
8	Q	1,489,538,701	을나 제1, 2호증
9	근로자 V 등	32,991,934	을 제42~47호증
10	W	50,000,000	갑 제6호증
합계	2,453,163,425		

나) 위와 같이 C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들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제1심판결 제6쪽 1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⑦ 이 사건 부동산은 약 600평(1,983.5m²)에 달하는 부지에 3동의 공장 건물이 있는 구조로 상당한 규모이고 그 매매대금도 1,50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C과 피고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당사자 간 직거래 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후 O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9. 10. 31.자 임대차계약도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이루어졌다), 이는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귀옥

판사정순열

판사이혜선

별지

1) 이는 각 항목의 관련 증거로, 다만, 순번 1 내지 5, 8항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순번 6, 7, 9항은 피고가 다투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인정하였다. 한편, 순번 10항은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나, 이 부분을 C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당시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